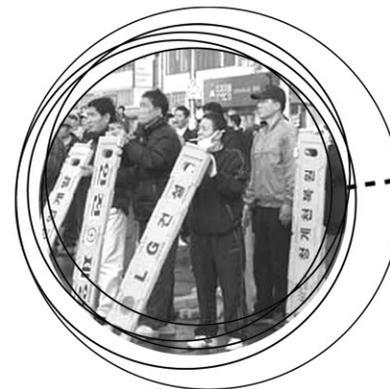




노점강패에 의한

인·권·자·료·집



전노련 전국노점상총연합

노점강파에 의한

인·권·자·료·집

노점단속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등 불법 사례

- 고 이근재 동지의 명복을 빕니다 -

1. 들어가며

고 이근재 열사의 투쟁을 통해 노점상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직접적인 책임의 주체인 고양 시에서는 ‘시민여러분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4쪽짜리 문건을 제작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직접적인 단속을 가족이 당하지 않아서 책임이 없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단속이 한차례도 없었다고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그리고 유서가 없다 한다. 기막힌 노릇이지만 우리는 이문제가 노점상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과 구조인 문제를 함께 검토하고 논의를 해야 한다.

우선 가족들은 그동안 수차례 노점단속으로 시달려 온 상태다. 운명하기 전날(11일)에도 고 이근재씨의 가족이 운영하는 지역인 주엽역 과 화정역 근처에 대대적인 노점단속이 있었다. 이날엔 무려 3백여 명의 용역깡패들이 무차별한 단속이 자행되었고 그 현장에 고 이근재씨와 그의 아내분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고양시는 노점상 수백 명의 노점단속 비용으로 31억이라는 어마어마한 혈세를 1년 동안 쏟아 붓고 있다. 경기도 내부 자료에 따르면 고양지역 전체 593명의 노점상 중 노점수거, 고발과 과태료 등 총 4909 회의 단속을 자행했다. 이 숫자는 노점상 1인당 이 숫자10여차례 단속을 받았다는 결론 이다.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노점단속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

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이근재 열사의 죽음의 뒤에는 시에서 고용한 용역깡패와 그리고 시민들의 혈세로 낭비되는 혈세를 들 수가 있다. 이비용을 가능케 하는 것은 행정대집행법과 경비업법이 버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본적으로 노점상의 문제는 노점상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빈곤, 실업, 불안정한 고용시장 등의 원인에 의해 노점상이 발생하는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이다. 하지만 노점상에 대한 정부의 시각은 여전히 단속을 통해 없어져야할 집단으로 고정되어 있고, 단속성과만을 노린 무분별한 노점상 단속과정에서 폭력성, 인권유린, 사유재산 파괴 등 불법성이 노출돼왔다. 이미 용역깡패들에 의한 인권 침해의 문제는 90년대 초부터 재개발지역의 철거현장과 노점상 단속 과정에서 이들의 폭력적인 행태가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노동계와 기타 다양한 분쟁의 현장에서 노골적인 폭력을 휘두름으로써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다음은 지난 시기 용역반에 의해 노점상들의 인권 침해 현장을 자료로 모아봤다. 이자료는 빙산에 일각에 불과 하다. 이와 같은 무차별한 단속과 인권침해로 고 이근재 동지뿐만 아니라 수많은 동지들이 있다. 그 동지들의 죽음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애도를 표하며 인간의 기본적인 자존감을 무차별하게 말살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살아있는 자들의 결의를 다 시한번 확인 할 때이다.

2. 노점단속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사례

노점상을 단속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용역업체는 일반 용역업체와 고엽제 전우회, 북파공작원 전우회, 장애인단체 등 각양각색이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1) 인천 아암도 - 죽음을 부르는 단속

경비업법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제10조(경비원의 결격사유), 제13조(경비원의 교육), 제17조(결격사유자 등의 통보),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등),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0조(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구



1995년 11월 인천의 아암도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이덕인 열사

1995년 인천의 아암도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된 장애인 노점상 이덕인 열사의 죽음은 용역관련 대표적인 사건이다. 11월 24일 공권력 1,400여 명과 용역회사 무창 소속 용역 400여 명 등을 동원하여 아암도 노점철거 행정대집행을 강제 실시하였고 당시 아암도 노점상들은 대책 없는 강제철거에 맞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철탑(골리앗)을 설치하고 대응을 하게 되었다. 당시 경찰과 용역 등 노점철거반은 한겨울임에도 망루에 소방차로 물을 뿌리고 포크레인으로 찍고 물과 음식공급을 차단하는 등 살인적인 진압을 실시하였다.

이후 이덕인 씨(67년생 남) 11월 24일 21시 경망루에서 내려와 500여 미터 떨어진 어룡소를 통해 탈출을 시도하다 실종된 후 11월 28일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당시 이덕인 열사의 시신은 얼굴과 뒷 머리, 양쪽 어깨, 팔 등에 상처와 피멍이 들어있고 시신을 뒤집자 줄로 포박 당한 상태로 상의와 신발이 벗겨진 채 물속에 엎드린 채로 발견되었다. 이 사건은 2002년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에서 민주화 운동운동 관련하여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 되었다.

2) 고속도로휴게소(기흥휴게소) - 고엽제 전우회와 해병대 전우회를 용역으로 고용

경비업법 제4조(경비업의 허가),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제10조(경비원의 결격사유), 제13조(경비원의 교육), 제17조(결격사유자 등의 통보),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등),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복), 제20조(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구 등) 등 위반



2001년 8월 20일 군복을 착용한 채 노점상 단속을 나온 용역반

2001년 8월 20일, 21일 이틀 동안 기흥휴게소는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용역으로 발주한 비 경비업체 소속의 고엽제전우회와 해병대 전우회 100여 명이 노점물품을 비롯해 진열대 역할을 하는 차량을 부수고 노점상들을 폭력으로 단속한 것이다. 휴게소마다 노점상 들은 많아야 3명 정도고 그 세 사람을 단속하기 위해서 고엽제전우회와 해병대전우회 소속 용역들은 군복을 입고 집단으로 사람을 구타하고 휴게소 이용객은 물론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

심지어 이들은 8월 22일 기흥휴게소에서 휴게소 내부에 노점물품을 진열하지 못하도록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휴게소 측이 식사제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타고 온 차량을 이용해 일렬로 휴게소 입구를 막고 무력시위를 하기도 했다. 이들의 폭행 과정에서 노점상들의 상의와 바지가 벗겨지고 집단구타를 당하기도 했으며 일부 노점상들은 목뼈와 허리뼈를 다쳐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다. 그리고 사진 촬영이나 비디오 촬영을 일체 금지시키며 카메라를 압수하거나 부수는 등 그 폭력성은 끝이 없었다.

3) 안양 - 동안구청 노점단속반, 엽기단속 물의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제13조(경비원의 교육),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등),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0조(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구 등) 등 위반



2003년 용역단속반원이 팬티를 내리며 노점상을 위협하고 있다

2003년 5월 30일 오후8시30분경 안양시 한림대학병원 건너편 부영3차아파트 앞에서 오가는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떡볶기와 순대를 파는 부부노점상에 대한 안양시 동안구청 건설과 관리계 노점상단속반의 단속이 있었다. 당시 동안구청에서 민간위탁한 용역업체직원 4명 중 한 명이 단속과정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노점상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다. 단속을 당한 노점상 장모씨는 단속반 직원4명이 트럭에 있는 가스통 줄을 끊고, 음식물과 조리기구 및 기타 집기를 강제로 압수했으며 위협을 하며 팬티만 입은채 아내를 밀치고, 자신을 옆의 풀숲으로 끌고 간뒤 옷을 벗고 속옷까지 벗어 성기를 자신에게 노출시켰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당일 단속현장에는 구청공무원의 관리감독 없이 용역직원들만의 엽기적인 노점상 단속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폭력 시비를 벗어나 노점단속반원이 옷을 벗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켜 노점상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었다. 당시 장모씨는 “죽고 싶다”는 하소연을 하는 등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당했던 것이다.

4) 부천 -고엽제 전우회, 장애인단체 등의 업체를 용역으로 발주

경비업법 제4조(경비업의 허가),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제10조(경비원의 결격사유), 제13조(경비원의 교육), 제17조(결격사유자 등의 통보),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등),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제복), 제20조(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구 등) 등 위반



2002년 용역들에 의해 이마 부위를 맞아 피를 흘리고 있는 노점상

부천시는 노점상들을 단속하기위해 고엽제 전우회 회원들로 구성된 (주)보훈업체 또는 '태풍' 용역, '열린정보' 라는 장애인단체가 용역업체등을 고용하여 2천년대 노점상 단속을 실시하며 마찰을 빚어왔다. 부천시의 경우 2001년 11월 12일 저녁 7시30분경, 보훈용역 소속 고엽제전우회 회원 10여 명이 원미구청에서 발부한 계고안내장을 배포하러 나왔으며 이들은 군복을 착용하고, 가스총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전노련 부천지역연합회 회원들이 이들을 붙잡아 파출소로 끌고가 군복착용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하자 파출소와 당사자들은 군복을 입은 것에 대해 위법임을 시인하였다.

이밖에도 구청을 방문하여 구청장면담을 요구, 건설과장과 면담을 하였고, 계고 전달이 공무원이 아닌 용역업체에서 했다는 것, 이들이 군복 착용과 총기 소지를 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이후 발생할 사태에 대해 구청에서 책임질 것인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건설과장은 구청의 업무분담인력이 부족하여 계고안내문 배포를 용역업체에 맡겼다고 말하고, 보훈용역에 단일복

장만을 요구했을 뿐, 군복을 착용하라고 한 적이 없으며, 총기소지는 신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는 등 단속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사태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답변했다.



2005년 북파공작원 등의 용역 등이 노점단속시 사용한 도구들

또한 2005년 5월 9일 부천시 원미구청은 ‘열린정보’, ‘산재장애인’ 등 장애인단체, 고엽제피해자 단체, 북파공작원 단체 등에 월 3,000만원씩 6개월을 기간으로 하여 단속용역 수의계약을 맺었다. “그동안 역사 주변의 불법노점상을 근절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왔지만 아직까지 별 성과가 없다”고 밝히고 “고심 끝에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불법 노점상을 관리하기 위하여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4개 단체에 단속 용역을 주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들 불법 용역들이 단속과정에서 사이다병으로 머리를 강타하는 폭력행위를 함으로써 여성노점상 한 명이 뇌수술을 받아야할 상황에 놓여졌으며 임신부 한 명은 임신3개월의 몸으로 부상을 당하였고, 포장마차에 깔리기도 하는 등의 불법적인 폭력을 당하였다. 이들 용역들은 가스총과 군용칼, 식칼, 가위 등을 지참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2005년 7월 10일 장애인 노점상 남궁혁 (남 58)씨와 그의 부인이 노점단속과 생계를 비판하며 분신자살을 시도하였다.

한편 부천타임즈 2005년 4월 26일 기사에 따르면 “장애인단체는 노점상 단속과 더불어 동시에 ‘기업형 노점상영업, 야시장, 한전 도둑전기사용 등의 문제로 시와 마찰을 빚어왔으며, 부천종합운동장 원형광장에’ 붕붕가 영업을 요구하며 이를 거

절하는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집단폭행하여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원미구청 김환화 가로정비팀장과의 인터뷰(위 신문 동일기사)에 따르면 “장애인에게 단속권을 주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하루 종일 노점상 옆에서 영업을 방해하면 무서워서 그만둘 것이고, 또 장애인들이 일당도 비장애인들의 1/2밖에 안되고 식사제공 등 제반 경비를 비롯한 예산이 적게 들어 이들에게 맡길 계획”이었다고 한다.

5) 미성년자들을 용역반원으로 고용한 강서구청

경비업법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제10조(경비원의 결격사유), 제13조(경비원의 교육), 제17조(결격사유자 등의 통보),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등) 등 위반

2003년 5월 10일 강서구 지하철 5호선 화곡역 입구에서 머리핀 등 간단한 악세사리를 파는 70세가 넘는 할머니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강서구청이 용역계약을 맺은 용역 20여명이 할머니 물건을 차에 실었다. 몸이 불편한 할머니는 충격으로 팔에 마비가 왔다. 이에 놀란 용역들은 할머니를 그대로 방치한 채 도망가 버렸다. 그 후 할머니는 병원에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 날 강서구청에서 고용한 용역들은 한 눈에 보기에 미성년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았고, 실제로 구청 직원과 강서경찰서 정보과 형사가 보는 앞에서 용역들에게 신분증을 제시요구를 했을 때 제시하지 못하기도 했다. 그들에게 주민등록증이 없지 않냐고 다그치자 그들은 주민등록증이 없음을 인정했다.



나이 어린 용역들

용역단속 중 쓰러진 할머니

6) 2003년 청계천노점상 행정대집행 과정 중 노숙인들을 용역으로 고용

경비업법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제10조(경비원의 결격사유), 제13조(경비원의 교육), 제17조(결격사유자 등의 통보),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등),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0조(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구 등) 등 위반



2003년 청계천 행정대집행에 동원된 노숙자 등 용역

2003년 11월 30일에 서울시에서는 노점단속을 이유로 용역업체 직원 2천여 명을 고용하였고 이중 1/4 정도가 노숙인들이어서 많은 논란을 빚었다. 노숙인을 용역으로 고용한 것은 경비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역고용수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고용된 노숙인들도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정대집행에 동원된 노숙인 용역 반들에게 1인당 4만원~5만원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당일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자 이들이 노점단속을 마친 오후에 다시 항의 농성을 들어가기도 하였다. 이날 지급된 전체 용역비용은 1인당 15만원으로 전체였으나 중간 브로커가 챙기고 나머지는 4만원-5만원 정도 지급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노숙인들을 용역만으로 고용될 시 이들이 부상을 당하더라도 특별히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이날 청계천 노점상을 싹쓸이 하는데 들어간 비용은 총 28억원의 비용이 들었다.

7) 의정부 - 노인들로 구성된 의정부 노점상들을 폭력으로 단속함

경비업법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제10조(경비원의 결격사유), 제13조(경비원의 교육), 제17조(결격사유자 등의 통보),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등),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0조(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구 등) 등 위반



용역들에 의해 머리를 부상당한

노점상과 용역들의 노점상 폭행 장면

2004년 11월 30일 민주노총경기북부지구협의회 등 북부 7개 단체로 구성된 경기북부 민중연대는 노점상 철거시 발생한 폭력사태와 관련, 김문원 의정부시장을 7일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 경기북부 민중연대측은 고발장에서 "지난달 30일 태평로 노점철거 당시 용역반원들의 폭력으로 노점상 30여명이 전치 2주~8주의 부상을 입었다"며 "시가 시민의 혈세로 용역 반원을 고용, 폭력사태를 야기한 만큼 김시장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북부 민중연대측은 또 고발장과 함께 시민 1만598명의 서명이 담긴 서명서와 강모(74.여)씨 등 노점상 21명의 진단서도 함께 제출했다.



2004년 의정부 휴대금지 물품인 방패 등을 지니고 있는 용역

8) 2005년 관계공무원의 참석 없이 일방적으로 단속을 하는 인천 용유지역

경비업법 제4조(경비업의 허가),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제10조(경비원의 결격사유), 제13조(경비원의 교육), 제17조(결격사유자 등의 통보),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등),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0조(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구 등) 등 위반



2005년 용역에 의해 찢기고 부서진 인천의 포장마차

2005년 4월 10일 4월 14일, 4월 30일 인천 용유도에서 오랫동안 생계를 이어오던 노점상들의 포장마차가 갑자기 들이닥친 용역들이 휘두른 곡괭이, 오합마에 의해 처참하게 부서지는 일이 발생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고용한 용역들은 심지어 여성들에게도 무참하게 폭력을 휘둘러 여성노점상 1명이 실신하기까지 했고, 대

부분의 노점상들이 큰 부상을 당했다. 당시 단속현장에는 단속을 책임질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담당자가 보이지 않았으며 일방적으로 용역들에 의해 집행이 되었다. 특히 이러한 와중에 관할 중부서는 용역들의 폭력행위를 처벌하기는커녕 시종일관 방관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9) 2005년 경기도 용인지역에서 폭력적인 노점상 단속을 벌이는 단속반

경비업법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제10조(경비원의 결격사유), 제13조(경비원의 교육), 제17조(결격사유자 등의 통보),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등),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0조(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구 등) 등 위반



용역이 휘두른 지름 3cm, 길이 150cm의 쇠파이프 쇠파이프에 머리를 부상당한 용인지역 노점상

2005년 4월 28일 오후 3시경 용인 신갈2지구 아파트 앞에서 쇠파이프로 무장한 6명의 용역들에 의해 전노련 용인지역연합회 지역장 등 2명이 집단 폭행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2명 중 한 사람은 지름 3cm, 길이 150cm의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아 피를 흘리는 상태로 강남대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으며, 다른 한사람도 같은 쇠파이프로 두들겨 맞아 응급실로 실려갔다. 이들 용역은 용인시청에서 고용한 (주)한성 소속 용역들이므로 밝혀졌고, 현장에서 붙잡힌 용역을 경찰에 넘겼다. 당시 현장에는 시청 담당 공무원이 동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0) 2005년 서울중구 롯데백화점 앞 미등록 용역업체를 백화점이 고용하여 폭력단속

경비업법 제4조(경비업의 허가),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제10조(경비원의 결격사유), 제13조(경비원의 교육), 제17조(결격사유자 등의 통보),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등),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0조(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구 등) 등 위반



2005년 3월 서울 중구 롯데 백화점앞에 투입된 용역강패 및 건설회사 직원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005년 3월 7일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주변 노점상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로 사설경비업체 대표 김모(30)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용역 직원 유모(28)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롯데 백화점 측은 인터넷 등을 통해 모집한 용역 직원 100여명에게 노점상 강제 철거를 지시 하였으며 롯데백화점 건설인부들을 동원하기까지 하였다.

11) 2005년 서울 신촌 나이 어린 용역들 고용하여 노점상 폭력단속

경비업법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제10조(경비원의 결격사유), 제13조(경비원의 교육), 제17조(결격사유자 등의 통보), 제18조(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등) 등 위반



용역이 들이부른 기름에 화상을 입은 신촌 지역의 노점상

2005년 5월 10일, 서울시 서대문구청은 50여명의 용역을 동원해 신촌 일대 노점상의 손수레 4대를 기습적이고 폭력적으로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용역들은 이에 항의하는 노점상에게 튀김 기름을 들이 부어 화상을 입히는 일까지 벌였다. 그 후 5월 12일 또다시 200여명의 용역들을 동원해 노인, 여성 가릴 것 없이 폭력을 행사하며 노점 수레를 강제 철거하였다. 이 날 또한 수명의 노점상들이 응급차에 실려 가는 일이 발생했다. 더욱이, 현장에 나와 있던 경찰 또한 5개 중대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었으면서도 폭력철거에 팔짱만 끼고 있었으며, 오히려 목숨 줄을 지키고자 발버둥치는 노점상들을 짓밟아 부상을 입히는 등 노점상들의 분노를 더욱 촉발시켰다. 이날 동원된 용역들은 겉모습이 매우 어려 보여 미성년자일 가능성마저 대두되었다.

12) 기타 2006년 경기도 구리시 노점단속의 일환으로 무창구역 강패를 동원하여 노점단속을 자행하였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점상 단속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전국노점상총연합'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약 1백억원을 육박하고 있다.

3. 정리하며

UN 인권위원회가 작성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르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조2항>은 '모든 인민은 호혜의 원칙에 입각한 국제경제협력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및 국제법상의 의무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그들의 전형의 부와 자원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인민은 그들의 생존수단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안적 생계수단을 제공하지 않은 채 폭력적 노점단속과 철거민들에 대한 강제철거는 '생존수단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조2항을 위반하는 행위다.

노점상의 경우 불안정 노동층과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식적인 경제 부문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생계방편이 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실업대책이나 사회복지가 마련되지 않는 한 다양한 연령층에서 노점상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노점상 양산의 책임이 정부의 경제정책과 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안적인 생계수단 혹은 사회복지를 제공하지 않은 채 노점상을 단속·철거함으로써 '생존수단을 박탈당하지 않을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수준을 유지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는 대안적 생계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노점단속 및 철거는 '노동에 의하여 생계를 영위할 권리'를 보장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6조1항>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정부는 노점상의 문제를 저소득도시민민의 실업대책과 생존권차원이 아닌 거리 질서 유지, 관리 차원과 사회문제화에 따른 치안유지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하여 정부는 노점상 감축을 목표로 용역발주 및 관계 법령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오직 단속을 목적으로 고용된 용역들은 단속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단속을 하고 있으며, 단속과정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 대부분의 노점상들은 단속과정에서 폭언과 폭력을 경험하며, 이에 따라 물질적 피해와 함께 정신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폭력적인 단속행위는 신체의 자유를 규정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9조>의 심각한 위반이다.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9조>는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든지 자의적으로 체포되거나 또는 억류되지 아니한다. 어느 누구도 법률로 정한 이유 및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0년대 중반 이후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용역을 발주하여 노점상 단속을 벌이고 있는 용역단속은 폭력적인 단속을 야기하지만, 관련 국가기관은 이를 묵인함으로써 인권보호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에 관한 마스트리히트 가이드라인¹⁾은 국가가 14(c)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침해하는 제3자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한 경우, 15(d)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 혹은 집단을 규제하지 않은 경우를 인권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폭력적 용역단속을 묵인하는 관련 국가기관의 행위는 그 자체로 인권침해 행위이다.

그러나 노점상 단속은 정부차원의 단일한 집행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어 진행돼왔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현행 '경비업법'인데, 경비업법의 각 세부조항들에서는 노점상

1) the Maasstricht Guidelines on Violation of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 1998, Human Right Quarterly, 20(3) paras.14(c), 15(d)

을 단속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단지 각 지방자치단체가 용역체결과 관련하여 자의적으로 경비업법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설사 경비업법이 노점단속 용역체결의 충분한 법적 근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노점단속을 위해 투입된 용역업체들 전부가 경비업법을 전혀 지키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용역업체의 적법성 문제부터 단속과정의 적법성 문제까지 두루 포함되는 내용이고, 관련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용역업체 선정과 단속투입과정에서 나타나는 불법성과도 연관된다.

시 • 고 이근재 열사의 명복을 빕니다

이름 없는 불꽃

땃별은 제 아무리 강렬해도
그늘을 만들지만
그 구석진 다소곳이 사르는
이름 없는 불꽃을 아는가

짓밟히고 또 짓밟혀도
그 좌절 그 절망을 끝내 희망으로 지피는
번지 없는 불꽃을 아는가

아, 모두가 잊었다 하지 마라
한 티끌 잿밭로 허공에 떠돈들
허공 어디에서고 불꽃으로 살아나는
영원한 사랑을 아는가
한밤일수록 더욱 번득이는 이름 없는 불꽃